

#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021
----------	------

2024년 9월 3일  
환경수자원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8월 12일, 임만균 의원  
나. 회부일자 : 2024년 8월 14일  
다. 상정일자 : 제32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4년 9월 3일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임만균 의원]

###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공립수목원인 서울식물원 및 푸른수목원의 효율적인 수목원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관리와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를 촉진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수목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 3) 수목원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4) 수목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5) 수목원 운영 및 이용, 입장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10조)
- 6) 수목원 내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7) 문화 프로그램 및 연간회원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안 제13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비대상사유서) 참조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 가. 개요

- 본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공립수목원인 서울식물원 및 푸른수목원 등의 효율적인 수목원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관리와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를 촉진하려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1) 조례 제정의 타당성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수목원과 정원의 조성·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목원·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제정<sup>1)</sup>되었음.
- 법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제1항<sup>2)</sup>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공립수목원’을 구분하고 있으며, 제5조제4항<sup>3)</sup>과 제11조<sup>4)</sup>에서는

1)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 2001. 9. 29.] [법률 제6446호, 2001. 3. 28., 제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5. 7. 21.] [법률 제13027호, 2015. 1. 20., 일부개정]

- 2)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①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수목원: 산림청장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2. 공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3. 사립수목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4. 학교수목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 3) 제5조(국립수목원 등) ④ 공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 4) 제11조(입장료 등) ①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각각 ‘공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공립수목원의 입장료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서울시는 푸른수목원<sup>5)</sup> 공원 전체 면적(200,956 $m^2$ ) 중 103,354 $m^2$  구역을 지난 2018년 공립수목원 제1호로 등록한 바 있으며, 2019년 개원한 서울 식물원<sup>6)</sup>에서는 전체 면적(505,350.9 $m^2$ ) 중 105,731 $m^2$  구역을 2021년 공립수목원 제2호로 등록하여 운영 중에 있음.<sup>7)</sup>
- 본 제정안은 ‘공립수목원’에 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 사업을 규정하여 촉진하려는 것으로써 시의적절하다 판단됨.

## 2) 조례안 검토

- 세부적으로 안 제3조(시장의 책무)는 ‘생물 종 다양성 구현’, ‘수목원 활성화’, ‘식물 관련 문화 확산’ 등 수목원을 통한 시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수목원 본연의 목적 및 기능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될 것이라 기대됨.
- 안 제4조는 수목원이 수행할 사업으로 식물유전자원과 관련하여 수집·증식·보존, 학술적·산업적 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내외 수목원간 정보 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시민의 여가·문화 활동 활성화, 교육, 전시, 문화 사업을 포함하여 폭넓게 명시하고 있음.

5) 푸른수목원(구로구 향동 10-3 일대): 근린공원-도시지역권, 면적: 200,956 $m^2$

6) 서울식물원(강서구 마곡동 812): 근린공원-도시지역권, 면적: 505,350.9 $m^2$

7) 한편, 서울대공원(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일대, 근린공원-광역권)은 전체면적(6,670,000 $m^2$ ) 중 229,759 $m^2$  구역을 2016년 경기도 공립수목원 제5호로 등록하여 운영 중임

- 안 제5조는 수목원의 개원 및 휴원에 관한 사항으로 매일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제원(온실)은 수목관리, 시설점검 등을 위해 매주 월요일에 휴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밖에 시민의 안전상 문제, 식물 보호, 시설점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휴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는 법 제11조에서 위임된 입장료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식물원 내 주제원(온실) 입장료(개인 및 단체)를 현재 시행 중인 요금과 같은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견은 없으며<sup>8)</sup>, 이와 별도로 연간회원권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바, 입지 위치 및 규모(면적, 보유종) 정도가 비슷한 국립세종수목원의 연회비 3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청소년, 어린이 대상으로 차등(감면)하여 규정한 것으로 파악됨<sup>9)</sup>.
- 안 제8조는 입장료 면제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바, 본 제정안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sup>10)</sup>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sup>11)</sup>를 준용하고 있음.

한편, 현행 ‘도시공원 조례’에서 규정할 때와 달라진 점은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sup>12)</sup>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sup>13)</sup>

8) 푸른수목원은 규모가 작고 보유종이 적어 무료로 운영되고 있음

9) 국립세종수목원 현황(규모: 65ha, 보유종: 2,035종)

국립세종수목원 연간회원제 연회비: <일반회원(만 7세이상 65세 미만): 30,000원>

서울식물원 현황(전체 규모: 50.5ha, 수목원 규모: 10.6ha, 보유종: 5,310종)

서울식물원 연간회원제 연회비(안): <일반회원 30,000원, 청소년 24,000원, 어린이 18,000원>

10) 안 제8조제1항제1호~제11호, 제15호, 제16호

11) 안 제8조제1항 제12호, 제13호, 제17호~제19호

12)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을 새롭게 포함하는 것으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안 제11조는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17조의2<sup>14)</sup> 및 법 시행령 제8조의2<sup>15)</sup>를 준용하고 있으며, 그 밖에 시민들에게 위화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 시설물 및 전시물을 파손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바, 온실 등 시민의 이동 동선 및 식물관리가 중요한 곳을 고려할 때 적절한 사항이라 판단됨.

---

를 제시하여야 한다.

-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14) 안 제11조제1호 및 제2호
- 15) 안 제11조제3호~제10호

[붙임]

□ 서울식물원 조성 개요

- 위 치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일대
- 규 모 : 공원면적: 505,350.9㎡/ 수목원 등록면적 : 105,731㎡
- 조성내용 : 도시형 식물원 + 호수공원
- 공 사 비 : 2,156억원(보상 및 기반조성비 포함 시 총 7,422억원)

구 분	사업비(억원)	비 고
공원관련시설	2,156	
공 원	1,054	열린숲, 호수원, 주제원, 습지원
건축물	837	식물문화센터, 지하주차장, 정원문화학교 등
시설물	265	한강연결보행교, 나들목, 양천길 교량 등

- 공사기간 : '15. 11. ~ '20. 9.
- 개 원 : 2019. 5. 1. (임시개원 : 2018. 10. 11.)
- 주요시설
  - 건 축 물 : 식물문화센터(지하2층/지상4층) 등 12개동, 연면적 총31,292.54㎡
  - 기타시설 : 휴게·편의시설 9종, 어린이놀이시설 3종, 수경시설 4종, 육교 1종
- 보유수종 : 5,508종, 2,262,731본
  - 목본류 1,975종, 615,995본 - 지피초화류 3,533종, 1,646,736본
- 위 치 도 (※수목원 구역: 빨간 점선)



## □ 푸른수목원 조성 개요

- 위 치 : 서울시 구로구 연동로 240번지 일대
- 규 모 : 공원면적: 200,956 $m^2$ / 수목원 등록면적 : 103,354 $m^2$
- 공 사 비 : 518억원(보상 및 공사)
- 공사기간 : 2009. 10. ~ 2013. 5.
- 개 원 : 2013. 6. 5.(2018. 10. 수목원 등록)
- 주요시설 : 숲교육센터 753.62 $m^2$ , 북카페 100 $m^2$ , 안내센터 40 $m^2$  등
- 보유수종 : 1,776종, 494,763본
  - 목본류 917종, 65,638본 - 지피초화류 859종, 429,125본
- 위 치 도 (\*수목원 구역: 빨간 점선)





## □ 서울대공원 수목원 개요

-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일대
- 규 모 : 공원면적: 6,670,000 $m^2$ / 수목원 등록면적 : 229,759 $m^2$
- 개 원 : 1985. 5. 1.
- 주요시설 : 전시온실, 재배온실, 식물표본전시관, 야외주제원 등
- 보유수종 : 1,587종, 168,696본
  - 목본류 509종, 77,030본 - 지피초화류 1,078종, 91,656본
- 위 치 도 (\*수목원 구역: 빨간 점선)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목유전자원”이란 수목 등 산림식물(자생·재배 식물을 포함)과 그 식물의 종자·조직·세포·화분(花粉)·포자(孢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3. “주제원”이란 서울식물원 내 다양한 식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주제정원과 온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목원을 통하여 생물 종 다양성을 구현하는 등 수목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식물 관련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민의 여가·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식물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복원·관리 및 전시
3.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산업적 조사 및 연구
4.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식물유전자원·식물원 관련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
7. 국내외 수목원 간의 식물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
8. 각종 식물표본의 수집·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9.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물 관련 교육, 전시, 문화 사업
10. 그 밖에 수목원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5조(개원 및 휴원) ① 수목원은 매일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제는 매주 월요일에 휴원하되, 월요일이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공휴일을 말한다)일 때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에 휴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목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시로 휴원할 수 있다.

1. 수목원 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목원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휴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운영상 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 휴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해당 수목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수목원 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수목원(주제원 제외): 상시 관람 가능

2. 주제원

가.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나.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주제원의 입장권 매표시간 및 입장시간은 관람 시작시간부터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7조(입장료) ① 시장은 주제원 내 식물의 유지, 관리운영 및 관람자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주제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주제원의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입장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2. 6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9.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4.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

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15.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16.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18세 이하의 아동

17. 공익 또는 학술목적으로 수목원 내에서 조사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8.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사람

19.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20. 그 밖에 시장이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증빙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입장료의 부분 감면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9조(시설의 이용허가) ① 수목원 내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와 이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설의 이용허가(이하 “이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 및 이용허가 시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이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용허가의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시설 및 식물 등의 훼손이 우려된다고 판단될 경우
4. 특정 개인·기관·단체 등의 영리목적 행사로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수목원 운영, 이용질서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11조(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수목원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
2. 식물의 꽃과 열매, 토석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3.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에 버린 행위
4.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5. 야영, 취사 및 불을 피우는 행위
6. 음주, 흡연 및 무단방뇨 행위
7. 상업 또는 광고 행위
8. 주차장 등 지정된 장소 외의 지역에서 주·정차하는 행위
9.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다만, 장애인·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한 출입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반려동물과 동반 입장하는 행위(다만, 장애인이 보조견과 동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종교의식, 집단오락 등 다른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12. 각종 시설물 및 전시물을 파손·훼손하는 행위
13.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음식물 섭취 행위
14. 다른 관람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15. 그 밖에 수목원 관리·운영·이용자 안전·질서유지에 위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12조(교육·전시·문화 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식물과 관련된 지식을 시민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전시·문화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하여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또는 참가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수강료 및 참가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연간회원제 운영) ① 시장은 수목원의 발전과 시민이 수목원 운영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연간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간회원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입비를 받을 수 있고, 가입한 사람에게 입장료, 교육·문화프로그램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목원 연간회원제 비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요금의 환불) 사전 납부된 주제원 입장료·연간회원제 가입비·시설 이용료·프로그램 수강료 및 참가비는 환불할 수 있으며, 환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5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시장은 수목원 관리·운영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수목원 홍보 등) ① 시장은 수목원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과 기념품을 제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행사, 설문에 참여한 사람
2. 전시참여 작가 및 국내외 초청 인사
3. 콘텐츠 제공, 취재 협조, 방송매체 홍보 지원 등을 하거나 기타 수목원 홍보에 기여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홍보물과 기념품을 직접 판매할 경우 판매대금은 서울특별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17조(편의시설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수목원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수목원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 및 임대할 수 있다.

1. 편의점 및 휴게음식점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점용·사용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8조(준용) 수목원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준용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식물원 내 주제원 입장료(제7조제2항 관련)

구 분		사용기준	금 액(원)
1일 권	개 인	어 른 1회 청소년 1회 어린이 1회	5,000 3,000 2,000
	단 체	어 른 1회 청소년 1회 어린이 1회	3,500 2,100 1,400
1년 권 (연간회원)	어 른	구매일로부터 1년	30,000
	청소년		24,000
	어린이		18,000
	가족회원		40,000 (추가비용: 1명당 10,000)
	무료대상		무 료
※(주)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초등학생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학생증 소지 중고등학생 ○ 어 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 ○ 단 체 : 유료입장객 3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 가족회원 : 동일세대 구성원, 직계존·비속 2명 기준			